

200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견

의안 번호	1156
----------	------

제안일 : 2005. 12. .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감 사 기 간 : 2005.11.28 ~ 12. 2(5일간)
- 감사대상기관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19개동),
- 감사반의편성 : 심 재 환 의원 외 7인
- 감 사 장 소 :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동사무소 감사장
- 주요감사실시내용
 -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현황(기간:2004년도 및 2005.10월까지)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2005년도 10월까지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조합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시민아파트 관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사항 및 옥외광고 관리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 등 건축행정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 보상업무 추진사항과 가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도로 및 하수사업과 수해,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대 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감사실시결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40건
 - 건의사항 : 53건
 - 우수사례 : 5건

3. 보고서 : 별 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5. 12. .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200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 2005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

2005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 監査의 目的

- 구 행정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소관 부서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2005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 하기 위함임

2. 監査期間 : 2005.11.28 ~ 12. 2(5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19개동)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 원 장 : 심 재 환
 - 부위원장 : 서 순 보
 - 감사위원 : 이종환, 유찬중, 김복동, 박종식, 김정대, 나승혁
- 감사 보조직원
 - 전문위원 : 김 충 식
 - 직 원 : 7급 김 경 량, 8급 이 수 정
 - 속 기 사 : 별정7급 서 은 미, 별정8급 유 연 숙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동사무소 감사장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05.11.28(월) 10:00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19개동 전동 (1일간 실시)
2005.11.29(화) 10:00	재 무 국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2005.11.30(수) 10:00	도시관리국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2005.12. 1(목) 10:00	건설교통국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재무건설 전부서)
2005.12. 2(금) 10:00	현장조사 등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현안사항 관련 회의 및 현장조사

6. 現地確認班 編成

반별	동 명	의 원 명	비 고
1	청 운 동, 효 자 동, 무 악 동	오 필근, 나 승혁	
2	부 암 동, 평 창 동	이 종 환	
3	삼 청 동, 가 회 동, 교 남 동	남 재 경, 서 순 보	
4	사 직 동, 종로 1,2,3,4 가동	홍 기 서, 김 성 배	
5	종로 5, 6 가동, 이 화 동	오 금 남, 유 찬 종	
6	명 료 3가 동, 혜 화 동	김 이 환, 박 종 식	
7	창 신 2 동, 창 신 3 동, 송인 1 동	이 재 광, 심 재 환	
8	창 신 1 동, 송인 2 동	김 복 동, 김 정 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

【재 무 과】

1.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2. 일반공사, 전문공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3. 수의계약 공사, 구매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주소, 업체명, 공사명, 실적(금액)
4. 국·공유 잡종재산중 무단점유토지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2005.1.1~10.31 현재)
 - 필지, 면적, 전수, 부과액, 징수액, 점유기간
5. 미등기 구유재산 등기 촉탁 내역(2005. 1. 1~10. 31 현재)
 - 필지, 면적, 전수, 등기촉탁일
6. 과년도 체납변상금 일제정리 추진실적 내역 (2005.10.31 기준 최근 3년간)
 - 체납현황, 징수, 채권확보, 결손처분 전수 및 금액
7. 2005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조치내역
 - 부서별, 유형별 조치사항
8. 구 금고 약정 자금운영 내역 (2005.10.31 기준 최근 3년간)
 - 회계별, 종류별, 원금 대비 이자수입, 이자율 등 기재
9. 연간단가계약업체현황 및 사업실적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0. 각부서별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현황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전자입찰, 수의계약, 일반계약 등
 - 년도별 계약현황 총괄표(공사, 물품, 용역전수, 계약금액 등)
 - 관리대장, 시공업체 및 용역업체현황,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서, 준공 및 발주 내역, 입찰관련서류,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계약관련 각종 보고서, 지출결의서, 기타자료
11. (국·시·구) 공유재산 보유현황(2005. 10. 31 현재)
12. 일반공사, 전문공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사업별 증감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13. 기부채납 재산중 임대인 경우 사용자 내역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관내, 관외거주자 구분작성(무상 기부채납자는 제외)

14. 구유, 시유, 국유재산 취득, 매각 및 대부실적(잡종재산 포함)
(매수자, 대부자, 대부료,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국·시·구수입 등)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5. 2005년도 공사계약 예정가 및 낙찰가 현황(1억원이상)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공사명, 낙찰자명, 소재지, 예정가, 낙찰가 등 구체적으로 작성
16. 수의계약 공사, 구매현황(주소, 업체명, 공사명, 실적(금액))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7. 각부서별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련(폐합성, 생활등)처리용역비 현황
- 용역계약서, 입찰 및 수의계약서, 설계(산출) 내역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8. 시비, 구비 등 연구개발비 집행내역(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9. 홍보게첨물 단가계약 구매 추진실적(2005. 1. 1~ 10. 31 현재)
- 발주부서, 계약업체, 건수, 금액, 예산절감 등 기재
20. 불용물품 관리현황 및 매각내역(2005. 1. 1~10. 31 현재)
- 매각일자, 금액, 물품명, 사유, 내구연수 등 기재
21. 국비·시비보조금 집행내역(2003. 1. 1~2005. 10. 31 현재)
- 과별, 수령일시, 사업명, 금액, 예산편성일자, 집행내역

【세무1과】

22.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23.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24.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25.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26.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율 변동 추이(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우리구의 세입감소대책(별도 작성)
27. 과오납발생 및 환부, 미환부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착오부과, 이중납부, 착오신고납부, 미환부세액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실적, 기타
28.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결과 추진실적(2005.1. 1~10.31 현재)
- 조사일자, 건수, 조치내역, 토지·건물 구분 작성
29. 법인 세무조사결과 추진내역(2005. 1. 1~ 10. 31 현재)
- 조사일자, 총법인수, 대상법인, 서면신고수, 직접조사수, 조치사항(부과금액 등)

30.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내역 및 향후대책(2005. 1. 1~10. 31 현재)
 - 현년도, 과년도 구분 작성
 - 2004년도 대비 세목별 구 수입징수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31.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운영 실적 및 문제점, 대책
32. 지방세 비과세현황 및 조사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조사후 문제점 및 조치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33. 구세 세목별(과년도 수입 포함) 세입징수 내역 및 대책(2005. 10. 31 현재)
 - 2004년도 대비 구분 작성.세입목표, 징수액, 미수액, 단위 : 백만원
34.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내역(2005. 1. 1~10. 31 현재)
 - 법인, 개인별 구분 작성. 건수, 부과액, 징수액 등
35. 지방세 감액처리에 대한 사유 및 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세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36. 세목별 구세 납세자 상위 100인 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37. 관내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입변화 현황
38. 2005년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내역(2005. 10. 31 현재)
 - 이의신청 건수 및 금액, 과·오납 등 별도 작성
39.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관리실태현황(2005. 1. 1 ~10. 31 현재)
 - 체납자, 체납액, 압류, 결손처분 등 기재

【세무2과】

40.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41.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42.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43.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44. 각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45. 지방세 미납자(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처분실적 및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46. 지방세 체납액 및 시효결손처분실적 및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세목별 건수, 금액, 체납자, 결손처분사유등 구체적으로 작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주차장
47. 세목별 지방세 체납자 상위 100인 현황

48. 지방세 부과, 체납징수 실적 및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구세, 시세구분, 현년도, 과년도구분, 건수, 체납액, 징수액

49.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 지급 내역(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재부과 건수, 행정심판 및 소송 내역 포함 기재(시,구세)
- 납세자, 물건지, 부과시기,징수시기,사유,환불결정액(본세+이자),과오납통지일, 과오납지급일 등

50. 세목별 과징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2005. 1.1~ 10. 31 현재)

- 세목(면허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 예산액, 징수액, 미수납액 등

51.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2005. 1.1~10. 31 현재)

52.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채권 압류 실적 및 향후대책 (2005. 1.1~10. 31 현재)

- 카드사(엘지, 삼성카드 등) 구분 작성, 50만원이상자, 건수, 금액등 기재

【지적과】

53.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54.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55.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56.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57.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58. 필지 불부합지현황 및 해소대책(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59.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대상업소, 위반업소, 위반 유형별 조치내역

60.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내역(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필지수, 결정·고시내역, 이의신청지가 필지 및 조치내역 등

61. 일제잔재청산 지적정리 추진실적(2005. 1. 1~ 10. 31 현재)

- 대상토지, 지적 경계 및 현황 측량 필지 등

62.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 진상화 구축 실적(2005. 1. 1~10. 31 현재)

- 대상, 스캔작업 용역 발주업체, 진도를 등 기재

【주택과】

63. 교통영향평가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사업별 구체적으로 작성(도시계획과, 건축과 포함)
64.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65.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66.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67.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68.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69.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대집행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동별향측포함 건수, 철거건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기타 조치내역 등
 - 증축, 신축, 대수선에 가까운 33㎡ 이상 및 이하 구분 작성
 - 2005.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양성화방안)에 우리구의 대상내역 및 대책 등
70. 저소득층 전·월세 용자금 지원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71. 과다 징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내역 및 반환내역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72. 재개발 및 재건축추진 현황
 - 2005. 10. 31 현재 지정완료 및 향후 추진할 지역 포함
7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현황(2005. 10. 31 현재)
 -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포함)
74. 공동주택우수단지평가 시상금 집행내역(2005. 1.1~10. 31 현재)
75.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 집행내역(2005. 1.1~10. 31 현재)

【도시계획과】

76.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77.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78.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79.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80.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81. 재개발 공람공고결과 주민의 의견서 내역(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사업별 구체적으로 작성(의견서에 대한 반영여부 명시)
8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매수청구전수,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시설결정, 집행완료, 미집행현황 등
83.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및 불법 현수막(게시물)의 단속실적,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84. 뉴 - 타운지구 개발 추진현황(2005. 10. 31 현재)
 - 추진실적, 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예상지역등 포함)
85.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 (2005. 1.1~10. 31 현재)
 - 개소, 시정명령, 제고,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내역
86. 종로 UP-Grade 광고물 정비 실적(2005. 1.1~10. 31 현재)
 - 목표대비 실적(집포수, 간판수), 집행예산, 향후계획 등 기재
87. 동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허가취소, 반려(사유명시)현황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88. 재개발구역지정 및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2005. 10. 31 현재)
89. 도시기본계획(풍치지구) 해제조치, 완화포함 처리현황 (2005. 10. 31 현재)
90.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현재
91.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2005. 10. 31 현재)
 - 목표대비 실적, 집행예산, 진도율 등
92. 동별 사도현황 및 사도에 대한 도로보수 공사대책,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진 측 과】

93.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94.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95.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96.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97.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98. 에어컨실외기 정비 추진실적내역 (2005. 10. 31 현재)
 - 대상건수 및 정비실적, 문제점, 향후대책 등
99. 동별 위반건축물의 현황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및 향후대책, 문제점 등
 - 2005. 10.31 기준 최근 3년간
 - 위반건축물 표기 동(棟)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100. 사설위험시설물 점검결과 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 (2005. 10. 31 현재)
 - 등급(A, S, C, D급별, 개소, 점검결과조치 내역등 구분 작성
101. 옥상 그린화 정비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2005. 10.31 현재)
102. 각 동별 5층이상 신축건물현황 및 가건축물 승인건수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가건축물 승인에 경우에는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103. 동별 장기미준공건물현황 및 과태료부과내역, 가사용현황, 향후 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04. 건축허가후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부과실적, 문제점, 향후대책 등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05. 동별 건축 인·허가건수 및 사용승인현황(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공원녹지과】

106.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107.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108.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109.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110.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111. 공원안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역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편의시설별 구체적으로 명시

- 112.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별 위험수목제거 및 가로수 가지치기 내역
 - 전지 예산집행내역 및 살충제 사용량, 가로수 하자보식현황
 - 2004년도 대비 구간, 그루, 일자, 업체명, 집행액 등
- 113.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및 소공원사업 내역(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시설명, 일자, 시공사, 목표대비 실적, 집행예산 등
- 114. 공원관리 일용직 인원현황 및 명단(2005. 10. 31 현재)
- 115.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집행 내역(2004. 1. 1~2005. 10. 31 현재)
- 116.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2005. 1. 1~10. 31 현재)
 - 사업명, 사업내용, 일자, 시공사, 집행예산 등 학교별로 작성
- 117. 종묘시민광장 정비사업 예산집행 내역(2004. 1. 1~2005. 10. 31 현재)
 - 일자, 시공사, 집행액 등
- 118. 종묘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 추진실적(2005.1.1~10.31 현재)
 - 필지수, 집행예산, 진도율 등 기재
- 119. 녹지시설 유지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20. 그린벨트 불법훼손내역 및 문제점,향후대책(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21. 구기동 유실수단지 및 우리구 관내 유실수단지 관리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22. 시 공원 보수정비공사 추진실적(2005. 1. 1~10. 31 현재)
 - 목표대비 실적, 집행예산 등
- 123.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실적(2005. 10. 31 현재)
 - 1. 동망정 재축공사 내역
 - 착공일, 완공일, 시공업체명,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 2. 교남체육공원 사유지 보상 내역
 - 보상필지,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 3. 송인근린공원 토지보상 내역
 - 보상필지,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 4. 창신2동(615-138) 공원조성 부지매입 및 조성내역
 - 매입필지,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 124. 약수터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2004. 1. 1~2005. 10. 31 현재)

【건설관리과】

- 125.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 126.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 127.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 128.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 129.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 130. 무허가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단속실적 및 변상금 부과실적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유형별 구체적으로 명시
- 131.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32. 공공용지(도로, 구거·하천) 도로점용료 건수 및 부과금액, 면적의 과다 (신고,허가면적보다 과다 점용) 및 불법점용에 대한 조치내역(보도 포함)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33. 가로판매점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34. 신발생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금액, 향후대책
 - 개소, 단속 연인원, 수거물량중 반환물량 및 폐기처분 물량 기재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35. 공공용지관리실태전수조사 및 조치내역,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1~10. 31 현재
 - 도로, 구거, 하천 별로 구분 작성
- 136. 공공용지 점용료, 변상금 징수 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하천점용료 포함)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 대비 징수액
- 137. 공익사업수행에 따른 보상금 집행내역(2005. 1. 1~10. 31 현재)
 - 보상관련 소송진행 사항 별도 기재
- 138. 공공용지(도로, 구거·하천, 과태료) 점용료 체납액 징수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2005. 1. 1~10. 31 현재)
- 139.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 1~10. 31 현재

【토 목 과】

- 140.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 141.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 142.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 143.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 144.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 145. 하수도개량 현황 및 도로포장(아스콘덱씹우기) 현황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공사명, 길이, 면적,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 146.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실적(2005. 10. 31 현재)
 1. 2004년도 관내 빗물받이 유지관리공사 내역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2. 2004년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내역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3. 명륜 2가 8-1~43-1간 도로개설공사 내역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4. 무악동 45-83~45-20간 도로개설공사 내역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5. 창성동 90-35간 도로개설공사 내역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6. 종로 6가 33~2-197간 도로개설공사 내역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총사업비 대비 집행예산 등
- 147.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내역 및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용역업체명, 육교명, 진단결과 및 조치내역 등 구체적으로 작성
- 148. 우리구 관내 육교현황 및 연도별 보수비 집행내역
 - 육교명, 위치, 보수내역, 보수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 149. 동별 도로굴착 인·허가 및 도로복구비 징수현황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50. 동별 제설장비 및 자재지급내역 및 재고현황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51. 원서동 181번지외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내역(2005. 1.1~10. 31 현재)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사업비, 계약금액, 집행예산 등
- 152. 관내 도로 보수공사 내역(2005. 1.1~10. 31 현재)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사업비, 계약금액, 집행예산 등

153. 관수동 16~장사동 14-1간 도로개설공사 내역(2005. 1.1~10. 31 현재)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사업비, 계약금액, 집행예산 등
154. 신영동 로타리 장의사지 단간지주연 도로확장공사 내역(2005. 1.1~10. 31 현재)
 - 착공일, 완공일, 업체명, 사업비, 계약금액, 집행예산 등

【재난안전관리과】

155. 재난과 관련하여 신고된 건수 및 처리내역(2005. 1.1~10. 31 현재)
 -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156.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개최 횟수, 참석인원, 심의안전, 회의수당 지급 등(2005. 1.1~10. 31 현재)
157.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관리 현황(2005. 1.1~10. 31 현재)
 - 개소, 점검횟수, 등급별(A, S, C, D급)로 작성
158. 시민안전봉사대 운영실적(2005. 1.1~10. 31 현재)
159. 민방위 체납과태료 징수실적(2005. 1.1~10. 31 현재)
 - 목표 대비 실적
160. 방독면 구입 및 배부내역과 현재 보유량(방독면 보급사업기간 전체)

【교통행정과】

161.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162.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163.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164.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165.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16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 대비 징수액
167.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구성위원수, 임명직, 위촉직, 회의참석수, 회의개최 횟수, 회의수당 지급액
168.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2005. 1.1~10. 31 현재)
 - 일자, 사업명, 사업물량, 시공사, 예산집행액
169. 미끄럼방지턱 신설, 재포장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70.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제작현황(업체, 내용별)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71.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 대비 징수액

172. 버스 전용차로 위반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실적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간의 시정내역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단속 연인원, 장비 기재
- 시정내역이 있을시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173.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내역(2005. 1.1~10. 31 현재)

- 정비대상, 사업내용, 집행예산, 진도율 등 기재

【교통지도과】

174.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행정자치부, 감사원, 자체감사 등)

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와 질문서 및 답변서 사본

175. 각종 인·허가내역 및 처리실적,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된 경우에는 별도 작성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176. 소관업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내역 및 소송(진행)결과와 사후처리결과

177. 2004년도와 2005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및 처리내역(미결민원 포함)

178. 소관부서 업무와 관련한 신문·방송 보도내용 및 해명자료

179. 'Green Parking 추진실적 및 문제점, 2006' 사업추진계획

- 2004. 1. 1~2005. 10. 31 현재
- 담장허물기사업, 이면도로정비사업 등 구분 작성
- 일자, 추진내용, 시공자, 용역비 포함 사업비 대비 예산집행액 등

180. 공영주차장 추진실적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동별로 작성)
- 일자, 위치, 구조, 면적, 설치면수, 시공자, 예산집행액, 향후대책 등
- 서인사마당, 명륜 3가, 낙산 B지구(별도 구분 작성)
- 추진경위 및 친립계획(당초, 변경내용포함), 예산집행내역, 민원처리현황

181. 주차시설물 정비 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4. 1. 1~2005. 10. 31 현재
- 일자, 사업명, 사업물량, 시공자, 예산집행액

182.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4. 1. 1~2005. 10. 31 현재
 - 위치, 대수, 일자, 시공자, 예산집행액
 - 183. 외국 공관 소유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84. 이면도로에 버스 및 대형트럭의 불법 장기주차(밤샘주차) 단속실적,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85.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내 부당주차 전인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86.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체납내역,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불법 주·정차의 경우(목표대비 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등)
 - 체납내역의 경우 별도 작성(건수, 체납액, 징수액, 미수납액, 대책 등)
 - 187. 주차장관리 위탁 내역 및 문제점,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위탁업무명, 계약방법, 입찰업체명, 입찰금액, 운영실적
 - 188. 각 동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운영실적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대비 징수액 등
 - 거주자우선주차제 탄력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
 - 189. 동별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현황 및 과태료부과실적, 문제점, 향후대책(기계식 주차장 별도 작성)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90. 무단방치 차량단속 및 문제점, 처리내역, 향후대책
 - 2005.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91. 교통서포터즈 운영 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2005. 1.1~10. 31 현재)
 - 일일 단속인원, 집행예산 등
- ※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작성시 참고사항
- 요구자료는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4.1.1~2005.10.31 사이를 기준으로 연도별 구분 작성

8. 監査意見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要求事項

【재무국】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 내용중 전체 총계, 오지, 탈지, 숫지 및 단위 미표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전부시 공통)
-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전유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등 권리보전 절차를 철저히 하기 바람(재무과)
-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별 실제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비용의 증감이 되고, 이 또한 부실공사 및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방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재무과)
- 2003~2005년도 각부서별 수의계약 449건중 ○○기업이 45건에 약 10%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재무과)
- 국·공유지 및 구유지 매각시 공시지가보다 조금높게 평가되어 현실 가격보다는 낮게 매각되고 있음. 이는 우리구 재정 형편에 한푼이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여야 되는 실정을 감안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시에 매각 예상금액을 심의위원회에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 충분한 조사를 한다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심의 내용을 숙기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기 바람(재무과)
- 과년도 채납변상금 결손처분에 있어서 1,888건에 914,237천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 입장에서 불매 채납징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으로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재무과)

- 구유재산중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실시하여 구제정도 높이고 불요불급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재무과)
- 과오납중 착오부과한 금액이 41,885,226천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담당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과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한 업무숙지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과오납등 착오부과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 2과)
- 5백만원이상 고액채납자가 아직도 우리구 재정에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납자 전담팀을 서울시의 38기동대처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차제에 그 동안의 활동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납징수업무에 대한 전문화된 공무원들로 재구성하여 보다 채납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과)
-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불납결손처분과 시효결손처분 등이 107,462건 19,468,298천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제원이 부족한 우리구 입장에서 볼 때 채납징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으로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 2과)
- 2003~2005년도 지방세 채납자의 124건 895,125천원을 재산공매처분 실적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우리구 빈약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채납자에 대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채납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세무2과)
- 2004년도와 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등에서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21건 1,062천원의 주민세 부과누락이 된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림(세무 2과)

-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경제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기 바람(지적과)

【도시관리국】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 내용중 전체 통계, 오자, 탈자, 숫자 및 단위 미표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 2005. 10. 31일 현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반환내역을 살펴보면, 140건에 68,875천원이 잘못 부과된 사안에 대하여 향후에는 담당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주택과)
- 2005년도 현재 우리구에는 2,030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주택과)
- 2005년도 현재 우리구에는 에어컨설비가 746건이 도로변에 낮게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후덥지근한 바람을 내뿜어 불편감을 주고 있어 이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 시공된 설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것(건축과)
- 우리구 관내 공원 대부분 낙후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낙후된 시설물은 조속히 정비하고, 아울러 부족하거나 파손된 시설물 정비를 즉시 수리 및 확충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공원녹지과)
- 1997년 7월 10일 구기동3-20외 2필지 1,500평에 능금나무, 자두나무 등 600주의 유실수 단지 등 2개소를 조성한 후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유실수에서

열린 과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노인정과 저소득층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동망산공원내 정지를 설치하였으나, 시공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2003. 6. 17일 붕괴된 이후 365,000천원을 투입 재시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준공식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공원의 명칭인 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현판을 설치하여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공원녹지과)

- 소규모공원이나 공지, 가로변과 구기동, 사직공원 등에 느티나무 및 유실수 등을 식재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재한 수목이 활착전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 고사목의 보식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제거와 가로수 전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주변상권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종묘공원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가 있는 장소인데도 잦은 집회와 노숙자들이 상시 거주하는 장소로 전락되어 식재되어 있는 수목들이 고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고사된 수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식토록 조치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 내용중 전체 총계, 오자, 탈자, 숫자 및 단위 미표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 2004~2005년도 각급 감사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지하매설물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등 10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는 이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2005년도 10월 현재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부과 11,319건, 1,838,922천원에
체납이 3,039건, 539,724천원으로 체납액이 약 34%에 달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하도록 할 것(건설관리과)
- 인공상점에서 도로상에 상품적치로 인하여 보행자 및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교통소통 원활 및 보행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우리구 관내 가판대가 329개소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으로 평의가 변경되었거나 허가된 장소가 아닌 장소로 무단으로
이전된 가판대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아울러
당초 허가조건에 위반된 사례가 109건이나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관리과)
-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이들 노점상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배출하는 등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이 방치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속인력의 외부용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 아울러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지속적
으로 강구하여 노점상의 무단 도로점용으로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
주고 이들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2004~2005년도 자체감사결과 광화문사거리의 1개소 침수방지 시설
공사등 9건 13,943천원이 과다 지출되어 환수 조치된 사안에 대하여
공사원가 및 정산 부적정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므로 향후에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토목과)
- 2005. 10. 31 현재 최근 3년간 일반공사, 전문공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은 관내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가단가 계약에서
당초 1,329,317천원에서 1,382,767천원이 증감되어 결론적으로 약 100%
정도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대부분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에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토목과)

- 도로굴착 및 각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토목,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동시에 공사를 함으로써 동일한 장소에 중복해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 및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사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토목과)
- 도로굴착시에는 도로법시행령 규정에도 있듯이 교통량이 적고 유동인구 이동이 뜸한 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토목과)
- 동절기 제설장비도 사전 점검을 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장비 작동방법도 각동 직원들에게 실시할 것이며, 또한 염화칼슘의 재고량에 대해서는 적정량을 초과 보유하지 않도록 소요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 소요량을 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아울러 염화칼슘 설치대가 부족한 지역과 고지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한 후 눈이 내릴때 신속하게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2005. 10. 31 현재 민방위 체납과태료 186건 25,500천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차량조회 등을 통하여 체권확보를 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재난안전관리과)
- 2000~2005년도에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 변경에 따라 구매한 후 동사무소(417,851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 소화기 등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문제점을 시정하고 앞으로는 유사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재난안전관리과)
- 동포앞 노상주차장을 비롯한 대부분 노상주차장의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차현황을 살펴보면, 본래 목적인

차량의 주차보다는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 일이 있으므로 노상 주차장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곳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한 후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교통지도과)

- 2005. 10. 31 현재 외국공관 소유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385건 55,310천원에 징수 37건 1,480천원이며, 체납은 1,348건 53,830천원으로 무려 97.3%로 거의 징수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교통지도과)

- 2005. 10. 31 현재 257건에 달하는 우선주차장이 당초 허가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통해 위반된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
(교통지도과)

-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 14,745백만원에 차량 1대당 3억원이 투입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본사업은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을 고려해 볼 때에도 투자 우선순위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교통지도과)

나. 建議事項

【재무국】

- 각종 건설공사의 수의계약 입찰시 관내에도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건설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관내 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재무과)
- 5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경우에 141건중 76건으로 약 60%가 500만원에서 약간 부족한 금액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은 특정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한다는 의문을 갖을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이 잘못되었다면,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 바람(재무과)

- 구 금고 약정 자금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62,800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74,400백만원에 대한 자금운영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예금예치 보다는 금리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이자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금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재무과)
- 각부서별 건설폐기물관련(폐합성, 생활등)처리 용역비에 대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분리발주를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발주를 함으로써 신속한 공사 업무추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바람(재무과)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구세입이 감소하여 구 재정운영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편성은 물론 계속사업도 편성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국세로 전환되어 부족한 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세의 세입확보를 위한 각종 징수를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세무1과)
- 법인서면 신고 접수후 신고납부 미이행, 과소납부 등 지방세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현황 및 특성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현장을 출장하여 법인 장부 등을 직접 조사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획기적인 지방재정확충과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기 바람(세무1과)
- 고질적인 고액채납자에 대하여는 채납정리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업체가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질적 채납자 및 고액채납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과)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현장확인이나 인근필지의 현황과 이웃간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구 등에서는 고율의 보상을 의식한 악의적인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구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정확히 건교부에 전달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지적과)

○ 종로구 전체가 일괄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지정된 사안에 대하여 뉴-타운지구 후보지 및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추진을 하는 지역외의 지역대하여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기 바람(지적과)

○ 중개수수료 초과징수와 중개대상물의 불성실한 설명으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한 사항의 취소등 5건의 소송결과 4건이 패소한 사안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소송전 고문변호사들에게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지적과)

【도시관리국】

○ 2005.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대책에 따라 대상 건축물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매스미디어·반상회보 등 언론매체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특별조치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주택과)

○ 종로구는 타자치구 보다는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어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날로 늘어날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할 수 있도록 재개발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주택과)

○ 삼일아파트의 경우 주택부분인 3~7층까지는 철거가 되었으나 상가 부분인 1~2층이 존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노후된 건물이어서 안전상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주택과)

○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단지내 편의시설인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주택과)

○ 주택과는 어느부서보다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

- 매년 서울시의 항공촬영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 했을 경우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대한 인지대의 비용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부과한 행정청으로 세외수입 일부가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바람

(주택과)

- 저소득층에게 전·월세임차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211건, 2004년 213건, 2005년 195건으로 임차비율이 해가 거듭될수록 수혜자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으므로 임차절차 등을 간소화 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주택과)
- 종로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7. 6. 30까지 연장된 한시법에 의해 2,928동이 완료되고 709동이 미개량 상태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량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는 지역들도 주거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주거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2의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문제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
-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뉴-타운 지구후보지와 겹치는 지역에 대해 소유주들이 중복 지정으로 인한 이중투자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불필요한 건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주택과, 균형발전추진단)
- 불법건축물 및 위법건축물이 행정조치를 받고서도 시정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행위허가시 관련부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인허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행정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주택과, 건축과)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권 확보를 위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가구를 분리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자체 수익성이 떨어져 일부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과, 건축과)
- 동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봉담당책임제로 단속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나 동기능전환으로 단속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무허가 건축행위가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어 도시관리측면이나 사후 강제이행금 부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니 무허가건물 단속체계를 정립하기 바라며, 단속이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10㎡미만의 소형평수의 생계형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현행 관련규정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주택과)
-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남보 상태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장 재건축이 시행되고, 아울러 사업 시행이 늦어짐으로써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과)
-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권리는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외의 지역 시설물에 대한 유지권리는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등 우리구관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권리가 이원화되어 시행함으로써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부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신속한 민원해소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주택과)
- 예지동 85번지 일대가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kotter kim 회사의 설계한 작품이 선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회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의 작품이 선정됨으로써 예산도 낭비되는 민이 없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도시계획과)

- 서울시 2002년 10월 23일자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에 종로구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일부인 송인2동 지역 등 많은 곳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종로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반영 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막대한 용역비를 사용한 후에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상정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던 바, 앞으로는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구의원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지역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도시계획과)
- 장기미집행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5년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3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 대부분이 20년간이나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주요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재정비 대상 도시계획 시설들의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설물 소유주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 2,000㎡ 이하의 건축허가인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줌으로써 잘못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종로구의 특성을 감안 하여 2,000㎡ 이하 일지라도 현장확인 후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의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우리구에서도 조사, 검사, 확인을 한 후에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위반건축물의 특별검사원 및 감리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서 법집행의 실효성이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축과)
- 2003~2005년도 우리구 관내 장기미준공건물이 198건에 이르고 있고 이들 건물들은 건축허가이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들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법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구체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허가후 허가대로 건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되어 사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축과)

- 가설건축물의 경우 허가당시 조건대로 건축이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상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건축과)
- 우리구는 수도서울의 중심이고 고궁과 문화제가 어우러진 역사적 도시이고 아울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으로 가로수 수종도 이에 맞도록 미관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종을 검토하여 식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어울리지 않는 가로수 수종이 식재된 곳이 많으므로 조사하여 교체 식재하시기 바라며 또한 효자로, 추사로 등에 일본명으로는 사꾸라라고 하는 벚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창경궁내에 식재되었던 벚나무를 모두 제거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구 관내 주요도로에 식재된 벚나무는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가로수로 식재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인왕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인 산책로가 없어 산행하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불편이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조속히 산책로가 설치되도록 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종로구 관내 15군데의 악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결과 검사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곳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으므로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이용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악수터에 대하여는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므로 우선 낙후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시비를 지원받아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놀이 공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낙산근린공원의 경우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파손된 시설물들을 신속하게 교체하고 효과적인 공원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구가 공원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곳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인근 점포에 우선권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도시미관도 고려한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노점상처럼 합법화 한다음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등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노점상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안을 적극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건의하시기 바람(건설관리과)
- 대학로 및 종로거리에 불법으로 1차선을 점유하여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로 인하여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만 및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을 설치 방안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것과 시행할 경우 저촉되는 관련규정이 있다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공공용지 점용료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11,806건 4,151,912천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허가중교부 이전에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쌍용아파트 및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의 경우 오수와 하수가 분리해서 시공이 되지 않아 1일 1~2회 정도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오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토목과)

- 각 지역의 뒷골목 소도로의 경우에 심한 요철과 지하하수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은 물론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안전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각동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개요 및 준공공사를 사전에 동사무소와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해서 사전에 불필요한 민원도 방지하고 효과적인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동기능전환 이후 토복, 하수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2002년 이전까지는 토목과에서 시행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전문성이 떨어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토목과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2개 내지는 3개 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토목과)
- 연화칼슘을 뿌리는 살포기가 현재 전동에 1대씩 배치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앞으로 각동사무소에서 폭설시 취약지역과 고지대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토목과)
- 우리구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 사공함에 있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나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는 직접 공사비의 보장이 절대적 요소이므로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덤핑행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방법에 획기적 전환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토목과)
- 현황도로의 포장과정에서 지목상에는 도로이나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포장공사 시행 과정에 그 구간만 중단한 사례가 있는바 우리구와 같은 도시형성이 오래된 구에는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매입·기부채납, 사용승인사정권 등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토목과)

- 2005. 10. 31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상 508건중 관리가 필요한 31건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안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재난안전과리과)
- 창신3동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창신동 주민들 대다수가 대학로 및 혜화동로타리를 경유에서 운행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책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지하철 6호선 환승역 개통과 함께 환승역의 명칭이 동묘앞역으로 되어 있는 역명을 청계천복원후 살아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염원하는 송인역으로 개칭되도록, 해당기관에 건의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도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동별 형평성 유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지역구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교통지도과)
- 송인2동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동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외곽으로 옮기고 현 위치에는 주간보호센터 또는 종합복지시설 등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교통지도과)
- 주택가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민들의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주민신고제를 강화하여 주민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주택가에 불법주정차로 하게 되면 즉시 견인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 2005년 10월 현재 최근 3년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건수가 533,777건에 21,162,972천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체납되어있으며 또한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체권 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시 배제 등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교통지도과)

다. 우수사례

【재무국】

- 각종 행사 및 홍보용으로 개별 구매하고 있는 플래카드(현수막)의 일괄 구매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가격표준화에 의한 전년도 대비 90,000천원의 예산절감을 하여 재무행정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재무과)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된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구세입이 감소하여 구 재정운영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규사업편정은 물론 계속사업도 편성하기 힘든 상황에서 157건에 3,799,272천원의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은 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좋은 표본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확대실시함으로서 지방세의 세입확보를 위한 각종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세무1과)

【도시관리국】

-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 시책사업 및 범시민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추진과 관련 우리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적극적인 승용차요일제 시행 확산을 위해 아파트 단지별 자치회 및 관리사무소 자율결의로 실천하는 업무를 추진한 결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우수구 입상과 더불어 2천만원의 상금을 받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써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속히 정착될 뿐만 아니라 사업 활성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

- 서울의 대표적인 중심거리인 종로를 질서있고 정돈된 국제수준의 시범 가로로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로업그레이드 3차 간판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비대상 970개 업소에 간판수 1,769개중 953개 업소 1,596개 90.2%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아울러 무질서한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아름답고 질서 있는 종로거리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도시계획과)

【건설교통국】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를 함에 있어서 2005년도 노점상 1,010건, 노상적치물 2,104건을 단속하였고, 1,843건 138,629천원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36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항구적인 노점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탑골공원, 종묘공원앞에는 대형 목재화분을 설치하여 획기적인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킨 점에 대하여 금년도 노점상단속 및 가로환경정비분야 평가결과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인 가로정비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원의 상금을 받은 사업은 모범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정비된 도로외의 기타 지역까지 확대실시하여 항구적인 불법 노점상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건설관리과)